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상행동 교직원에 대한 분리조치 및 지원 근거 마련 >  
■ 백선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533호)

2025. 6.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2 |
| □ 이상행동 교직원에 대한 분리조치 및 지원 근거 마련 ..... | 2 |

##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백선회의원 등 15인
2. 발의연월일: 2025. 2. 27.
3. 회부연월일: 2025. 2. 28.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대전 초등생 살인 사건은 교내 안전망의 허점과 교직원의 정신건강 관리가 필요함을 보여주었음. 학생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교직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교육 현장 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아동의 안전과 생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교직원의 이상행동이 감지되더라도 일선 학교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교내에서 교직원의 이상행동이 감지될 경우 신속한 분리 조치 등이 가능하도록 학교장의 권한을 확대하고, 필요할 경우 해당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의료, 사회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교내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교직원의 심리적 안정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과 생명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6 신설)

### Ⅲ. 검토의견

#### □ 이상행동 교직원에 대한 분리조치 및 지원 근거 마련

개정안은 교직원의 이상행동으로 학생의 보호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속한 분리조치 등이 가능하도록 학교장의 권한을 확대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감이 해당 교직원에게 교육, 의료, 사회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내 안전 관리 체계 강화와 교직원의 심리적 안정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과 생명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6 신설).

| 현행   | 개정안                                                                                                                                                                                                                                         |
|------|---------------------------------------------------------------------------------------------------------------------------------------------------------------------------------------------------------------------------------------------|
| <신설> | <p><u>제53조의6(교직원에 대한 긴급 조치) ① 학교의 장은 교직원의 이상행동으로 인하여 학생의 보호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해당 교직원을 학생으로부터 분리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u></p> <p><u>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 지체없이 이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p> <p><u>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조</u></p> |

|  |                                                |
|--|------------------------------------------------|
|  | <u>치로 인해 필요한 경우 교육, 의료, 사회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다.</u> |
|--|------------------------------------------------|

먼저, 개정안 제53조의6제1항 및 제2항은, 교직원의 이상행동으로 학생의 보호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장이 해당 교직원을 학생으로부터 즉시 분리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조치한 경우 이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함.

이는 학교장이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직원으로 인해 학생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사립학교법」이 적용되는 학교 중,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임무는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교육·지도하는 것이므로,<sup>1)</sup> 학생의 보호를 위해 교직원에 대하여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적합한 것으로 보임.

1)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①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민원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고, 학생을 교육한다.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각종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둔다.

제15조(교직원의 임무) ① 총장 또는 학장은 교무(校務)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또한, 교육감은 학교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대한 사무를 관장하고, 공·사립 초·중등학교를 지도·감독하고 있으며,<sup>2)</sup> 개정안 제53조의6제3항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주체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학교장이 교육감에게 조치 내용을 보고하는 것은 적합한 것으로 보임.

다만, 교직원을 업무에서 배제하는 즉시 분리 등의 조치는 긴급한 필요를 고려하여 학교장의 판단으로 조치하고 교육감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조치 사유 중, ‘이상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되지 않아 학교장의 조치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아울러,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이 보장받는 신체의 자유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고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으므로<sup>3)</sup>, 교직원의 신체를 물리적으로 제지하는 것을 포함하는 분리조치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

##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육감) ①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둔다.

②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해당 시·도를 대표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6조(지도·감독)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공립·사립 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 3) 「대한민국헌법」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다음으로, 개정안 제53조의6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해 필요한 경우 교육감이 교육, 의료, 사회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고려할 때, 교육, 의료, 사회서비스 등은 개정안 제53조의6제1항에 따라 조치 받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지원함으로써, 해당 교직원의 심리적 안정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과 생명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나, 개정안에는 지원 대상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음.

또한, 개정안에서 지원 항목으로 규정된, ‘교육, 의료, 사회서비스 등’ 중, 사회서비스는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의 한 종류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열거된 교육, 의료를 포함하고 있음.<sup>4)</sup>

#### 4)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2.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공공부조”(公共扶助)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명확한 근거를 기반으로 실효성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받은 교직원’ 등으로 명시하고, 지원 범위를 해당 교직원에게 필요한 교육, 치료 등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아울러,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을 신설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8524호, 2025.2.27.), 교원이 학교 구성원에게 위해를 가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학교장이 분리 조치 후 이를 임용권자에게 보고하는 내용을 포함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8807호, 2025.3.11.), 정상적 업무수행이 어려운 교육공무원 등에 대한 분리조치, 업무배제 등을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교육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분리조치를 규정하는 법률, 분리조치 사유·방법·절차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할 필요가 있음.

[표 1] 분리조치, 업무배제가 포함된 개정안 현황

| 구분 | 개정법률안<br>(의안번호)       | 대표<br>발의자 | 발의일/<br>회부일               | 주요 내용                                                                                                                                            |
|----|-----------------------|-----------|---------------------------|--------------------------------------------------------------------------------------------------------------------------------------------------|
| 1  | 교육공무원법<br>(제2208225호) | 조정훈<br>의원 | 2025.2.17./<br>2025.2.18. | • 학교의 장은 정신적 어려움으로 직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직무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용권자에게 보고하여 조치하되 긴급한 경우 학교의 장이 우선 직무배제를 하고 임용권자에게 사후 보고 가능(안 제44조의2)         |
| 2  | 교육공무원법<br>(제2208390호) | 김문수<br>의원 | 2025.2.24./<br>2025.2.25. | • 학교의 장은 교육공무원이 학교구성원에게 위해를 가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임용권자 보고(안 제44조의3 신설)                                                              |
| 3  | 교육공무원법<br>(제2208393호) | 안상훈<br>의원 | 2025.2.24./<br>2025.2.25. | • 학교의 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폭력 행위 등을 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자에 대하여 직무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용권자에게 보고하여 조치하되 긴급한 경우 학교의 장이 우선 직무배제를 하고 임용권자에게 사후 보고 가능(안 제44조의2) |

| 구분 | 개정법률안<br>(의안번호)        | 대표<br>발의자 | 발의일/<br>회부일               | 주요 내용                                                                                                 |
|----|------------------------|-----------|---------------------------|-------------------------------------------------------------------------------------------------------|
| 4  | 교육공무원법<br>(제2208645호)  | 윤상현<br>의원 | 2025.3.4./<br>2025.3.5.   | · 학교의 장은 학생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신상 장애가 있는 교원을 업무배제, 분리조치 가능(안 제44조제2항)                              |
| 5  | 대안교육기관법<br>(제2208531호) | 백선희<br>의원 | 2025.2.27./<br>2025.2.28. | · 학교의 장은 교직원의 이상행동으로 학생 보호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해당 교직원을 학생으로부터 분리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 가능(안 제17조의2) |
| 6  | 사립학교법<br>(제2208807호)   | 김문수<br>의원 | 2025.3.11./<br>2025.3.12. | · 학교의 장은 교원이 학교 구성원에게 위해를 가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분리조치 후 이를 임용권자에게 보고(안 제58조의3 신설)                              |
| 7  | 초·중등교육법<br>(제2208524호) | 백선희<br>의원 | 2025.2.27./<br>2025.2.28. | · 학교의 장은 교직원의 이상행동으로 학생 보호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해당 교직원을 학생으로부터 분리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 가능(안 제20조의4) |
| 8  | 초·중등교육법<br>(제2209769호) | 김대식<br>의원 | 2025.4.11./<br>2025.4.14. | · 학교의 장은 교원 간 또는 교원과 학생 간에 폭력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 교내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사자 분리 등 적절한 조치 가능(안 제20조의2 등)            |
| 9  | 학교폭력예방법<br>(제2208139호) | 강경숙<br>의원 | 2025.2.13./<br>2025.2.14. | · 학교전담경찰관이 해당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긴급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즉시 경찰서장 또는 교육청에 보고하고 긴급 분리 조치 가능(안 제20조의6)         |

주: 개정법률안명 - 의안번호 순으로 정렬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 등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 [개정안 관련 교육부 등 의견]

|                                                                                                                                                                                                                                                                                                                  |
|------------------------------------------------------------------------------------------------------------------------------------------------------------------------------------------------------------------------------------------------------------------------------------------------------------------|
| <p>○ <b>교육부: 일부수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원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보이는 경우 학교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 분리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며, 법제화를 위해 현재 「교육공무원법」 개정 추진 중임.</li> <li>-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도 학생 보호 등을 위해 긴급 분리조치의 법적 근거가 요구되므로, 「교육공무원법」 개정 시 「사립학교법」 개정도 함께 논의·추진될 필요가 있음.</li> </ul> |
| <p>○ <b>인천광역시교육청: 일부수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제 행동을 반복하는 교원을 현장에서 배제할 수 있는 실정법적인 권한이 약하기 때문에 법률안 개정이 절실함.</li> <li>- 학교장이 심각한 사전 징후를 보이는 교사에게 단호하고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학교현장에서는 한계가 있어, 관리자가 아닌 교육청 차원의 긴급조치가 필요함.</li> </ul>                                                              |

○ 경기도교육청: 신중검토

- 학교장의 분리조치 등 대응 권한이 강화될 경우, 자칫 자의적 판단이나 오남용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안 제53조의6제1항의 ‘교직원의 이상행동으로 인하여 학생의 보호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은 학교장 단독 판단이 아닌, ‘교원인사위원회’ 또는 ‘학교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방식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교직원이 부당한 조치를 받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이의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 법률안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경상북도교육청: 일부수정

- 학교장이 분리조치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되, 필요한 경우 교직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독단적이거나 자의적인 판단에 대한 제한 장치 마련이 필요함.

문 의 처

02)6788-5189